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50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박성훈 · 박충권 · 김재섭
김석기 · 김승수 · 최은석
이인선 · 이달희 · 김기현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 115조를 준용한다. <u><신 설></u>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u>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 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 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 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 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 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u>

제39조(벌칙)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0조(양벌규정) -----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